

- 무릉별유천지 아스타 이벤트 조형물 임차(설치) -

과업지시서(안)

I

사업개요

가. 과업명 : 무릉별유천지 아스타 이벤트 조형물 임차(설치)

나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~ 2026. 10. 31.

1) 식물수급 및 조형물 제작 설치 : 착수일 ~ 2026. 9. 29.

2) 현장 조성·연출 및 관리 기간 : 2026. 9. 30. ~ 2026. 10. 31.

※ 아스타 이벤트 기간 : 2026. 10. 9. ~ 2026. 10. 11.

3) 현장철거 및 사업비 정산 기간 : 2026. 11. 1. ~ 2026. 11. 30.

다. 사업비 : 금49,730,000원(금사천구백칠십삼만원)(사비)(부가세 포함) / 조달수수료 별도

※ 토피어리조형물 제작 설치, 제세공과금 등 기타부대비용 일체 포함

라. 위치 : 무릉별유천지(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이기로 97 일원)

마. 계약방법 : 카탈로그 계약(제안요청에 의한 납품요구)

※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」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으로 「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」 및 특수조건을 따름

바. 사업내용 : 포토존 토피어리 조형물 설치 및 유지관리, 철거

1) 무릉별유천지 아스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요 지점의 연출 주제에 어울리는 상징성 있는 토피어리·조형물 연출

2) 행사기간 내 조형물 경관 조성 및 전시·연출·관리 등 업무 일체 수행

가) 행사기간 주요경관 지점에 토피어리 조형물 조성 및 전시·연출·관리 등 전반

나) 토피어리 조형물 조성, 시설물 등 철거 및 원상복구 전반

3) 무릉별유천지 아스타 이벤트를 대비한 조형물 및 관련 장식물 설치

4) 행사 전시효과를 최대한 살린 다채로운 오브제 선정 및 화분 연출

5) 전시기간 중 토피어리 조형물 훼손에 따른 복구 등

※ 토피어리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와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업체 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

6) 과업기간 종료 후 철거 및 철수, 시설물 원상복구 등

7) 준공계 작성 및 제출

8) 기타 동해시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

II

과업세부내용

가. 과업개요

1) 사업위치 및 규모

구분	규모	연출 위치 및 내용	비고
경관 시설물(게이트㉠)	3개 (h3.0m 이상)	주요 위치	
경관 시설물(포토존㉡)	1개 (h3.0m 이상)	메인행사장 등에 설치	
할로윈 토피어리(호박 등)	60개 (L0.2m 이상)	각 경관 시설물	
행잉형 식재 조형물	30개	경관 시설물(포토존) 내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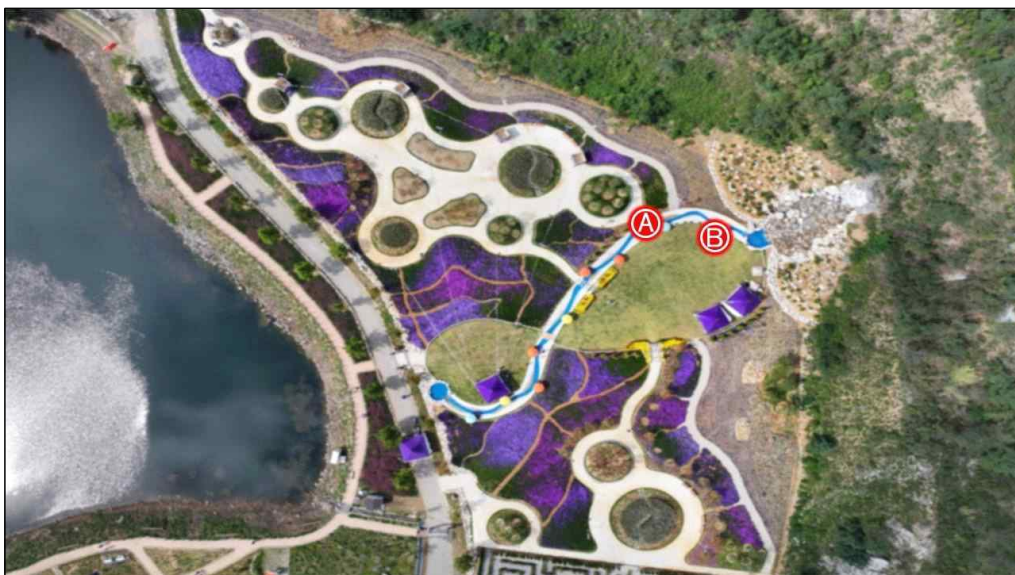
※ 사업비·규모·연출내용·세부항목 등은 현장상황 및 기술제안 등에 따라 변경 가능

나. 과업의 범위

1) 연출방향

- 무릉별유천지 단지 내 지정 위치에 토피어리 조형물을 설치를 하여 축제 분위기 고취 및 관람객 볼거리 제공
- 토피어리 조형물 설치 기간 동안 유지관리 용이한 수종 도입
- 강풍이 잦은 지역이므로 강풍에 견딜 수 있는 조형물 설치
- 무릉별유천지와 아스타 이벤트를 홍보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 연출
- 주요 화단 주변 방문객 체류 위치에 이벤트 분위기 형성

2) 대상지 현황



3) 과업내용

- 무릉별유천지 아스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요 지점의 연출 주제에 어울리는 상징성 있는 토피어리 조형물 연출
- 각 경관 시설물 외관에 명칭 등 안내를 위한 조형물 설치
- 행사기간 내 토피어리 조형물 경관 조성 및 전시·연출 등 업무 일체 수행
 - 가) 행사기간 주요경관 지점에 토피어리 조형물 조성 및 전시·연출·관리 등 전반
 - 나) 토피어리 조형물 조성, 시설물 등 철거 및 원상복구 전반
- 무릉별유천지 아스타 이벤트를 대비한 조형물 및 관련 장식물 설치
- 행사 전시효과를 최대한 살린 다채로운 수종 선정 및 연출
- 전시기간 중 토피어리 조형물 훼손에 따른 복구 등
 - ※ 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와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업체 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
- 과업기간 종료 후 철거 및 철수, 시설물 원상복구 등
- 준공계 작성 및 제출
- 기타 동해시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

4) 추진일정

- 사전협의 및 용역설계
- 제작 및 설치
- 시운전 및 점검, 보완
- 연출, 운영 및 관리
- 시설물 철거, 정산 및 결과 보고

5) 기타 과업 사항

- 제안요청서 제안내용에 명시된 목적(컨셉)과 연출내용을 반영하여 기획하고, 제안. 업체 측에서 세부 연출 내용 및 디자인 제안
- 사업 대상 지면 : 각 구역별 환경에 고려하여 조성
 - ※ 원활하고 안전한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 시 지면 보호시설 설치 등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, 사업 종료 후 지면 복원 등 원상복구 필수
- 반드시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기반 시설을 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. (현지 동선, 차량이동, 기존 수목 위치 등을 감안)
- 시설물 제작 소요 비용 산출이 어려울 경우, 세부 견적서 첨부

- 토피어리 조형물은 보행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, 관람객의 효과적이며 안전한 관람 형태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.
- 강풍 등에 의하여 전도 및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.
- 본서 및 공고문, 제안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서류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.
- 사전 구조물 제작, 화단 식재 등 사업에 수반하는 모든 작업 사항을 포함한 단독 단위 사업이어야 함.
- 설치 완료 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: 교통, 자연재해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발생 시 제안 업체에 일체의 책임이 있음.
- 작업현장 내의 안전사고·화재·도난 및 전시품 훼손의 방지에 노력하고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함.
-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.

III

과업수행지침

가. 일반사항

- 1)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작계획 및 일정 등 제반서류를 제출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한다.
- 2) 과업수행자는 토피어리 조형물 제작과 관련하여 사업목적, 취지,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무릉별유천지의 상징성이나 보라색을 강조하는 등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기획, 구조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.
- 3)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
- 4) 과업수행 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.
- 5)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해결·보상하여야 한다.
- 6)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인적·

물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.

- 7)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.
- 8)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성과품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납득할 만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.
- 9) 과업수행 결과 과업 지시서와 차이가 있을 경우 과업금액의 조정 및 대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.
- 10) 과업수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,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11) 본 과업은 토피어리 조형물 제작과 기타 과업 수행 중 필요한 성과물 제작에 적용하고 아래와 같이 과업 수행조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.
- 12) 토피어리 조형물 디자인 및 설치는 무릉별유천지 아스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무릉별유천지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발주처에서 결정한 디자인으로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.

나. 변경 및 중지

- 1) 과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. 단,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이 조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2)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 내용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3)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4) 다음과 같은 행위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.
 -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
 -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
 -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
 -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

다. 보안대책

- 1)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2)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,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사용 등 권리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.
- 3)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.

라. 추진 및 관리

- 1) 행정절차를 위한 협의는 업체의 책임하에 추진한다.
- 2) 연출기간 중 토피어리 조형물에 설치된 수목 및 초화류가 고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함
- 3) 포토존, 구조물 등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설치된 작품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함
- 4) 과업수행자는 식재한 식물이 고사하지 않더라도 생육저하, 질병 및 바이러스 감염, 시들향 등 적절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관계 없이 원인을 분석하여 상토교체, 식물체 보식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.
- 5) 사업기간 종료 후 철거계획을 사전 수립 및 반영하여야 하며,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폐기하여야 함
- 6) 철거 및 운반에 소요되는 장비의 수급 등 업체의 책임 하에 추진한다.
- 7) 사업 중 또는 사업완료 후 작업현장 및 인근 시설의 파손,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발견 즉시 보수해야 함
- 8) 철거기간 중에는 매일 현장 청소를 통해 관광지 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9) 토피어리 조형물에 도입되는 수종은 최초 설치시 60% 이상 개화된 상태여야 하며, 화훼류를 사용할 시 생육 특성상 개화의 지속이 어려울 경우 일부 수종의 개화시기가 교차되도록 배치하여 전시기간 동안 최대한의 개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화 및 보식 관리하도록 함
- 10) 입찰 후 계약재배 기간 중 매월 초 5일까지 생육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
- 11) 계약 후 도입 수종의 재배기간 중 재배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생육 (요소 질 연약, 개화지연) 불량으로 적기납품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함
- 12) 모든 작품 및 자재 등은 현장 설치 가격으로 정함
- 13) 제안업체는 상기의 규격과 기준을 준수하여 도입 수종을 납품하여야 하며,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현장에 운반 후, 해당기관의 감독관이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함
- 14) 규격 및 기준 등에 미달된 제품은 3일 이내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함
- 15) 조형물 작품은 규격 이상으로 수목 및 초화류가 모형에 모두 덮여있는 상태여야 함
- 16) 조형물 등은 2026. 9. 30. 까지 설치되도록 하며 운반과 동시에 현장에 설치되도록 함
- 17) 운반에 소요되는 장비의 수급 등은 업체의 책임 하에 추진
- 18) 운반 후 이상이 없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시 납품이 완료됨
- 19) 운반 및 하차 시 회사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손상 및 파손, 설치 기간 중 시설물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보수하여야 함
- 20) 설치 완료 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: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, 설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수행업체에 일체의 책임이 있음
- 21) 작업현장 내의 안전사고, 화재, 도난 및 전시품 훼손의 방지에 노력하고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함
- 22)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- 23) 토피어리 조형물 조성 시 작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함

마. 사업의 정산

- 1)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점검.조사 등 정산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설치기간 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산출내역서 항목 중 집행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반납조치 해야 한다.
- 2)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, 물자를 직접 조달하는 경우 등으로 대행사와 계약한 사업내용이 일부 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는 감액하여 정산한다.
- 3) 정산결과 발주기관의 사업변경으로 계약내용 일부가 조정되어 계약금액보다 증가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한다.

바. 기타사항

- 1) 조형물에 반영되는 식물은 틀에 재배하여 생육이 최상인 상품으로 납품한다.
- 2) 설치 및 철거 작업 전·중 안전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.
- 3)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(소음, 분진, 악취 등)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,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.
- 4) 용역 중 또는 용역완료(준공) 후에 작업현장 및 인근 시설의 파괴,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발견 즉시 보수한다.
- 4) 운반 및 하차 시 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손상 및 파손 또는 연출기간 중 시설물의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정상품과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.
- 5) 작업현장 내의 안전사고, 화재, 도난 및 전시품 훼손의 방지에 노력하고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.
- 6)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7)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·허가 등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.
- 8) 계약상대(수급인)는 과업수행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에 동해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 - 가) 착수계 : 착수일
 - 나) 설치계획서 : 착수일
 - 다) 결과보고서 : 계약기간 내
- 9) 동해시 및 계약상대(수급인) 모두 천재지변, 전쟁, 사변, 정부규제 등의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쌍방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참고자료

	 무릉별유천지 MUREUNG BYEOLYUCHEONJI  무릉별유천지 MUREUNG BYEOLYUCHEONJI	
축제 홍보 포스터(미정)	무릉별유천지 엠블럼(로고)	대표 캐릭터(무별이)

IV

업체선정 개요

1. 계약방법

-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(토피어리 조형물 임대서비스)을 통한 계약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6조(카탈로그 계약)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

2. 제안요청

-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: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

3. 납품 대상 업체 선정기준

- 예정가격의 88%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은 90%)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

4. 제안서 제출 기간

- 제안마감일 : 만 3일(입찰공고일 기준, 토요일,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)
- 제안서 제출 기간 중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」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 연기 처리할 수 있다.

5. 제안서 제출

- 제안자는 제안서를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제출

6. 기타사항

-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관계 법령 등을 따른다.